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후

1. 의결주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금액을 2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첫째 출생아동에게는 200만원, 둘째 이후의 출생아동에게는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을 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에서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위원회의 부위원장직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효율적 법제 지원을 위해 법제처장을 당연직위원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1. 7. ~ 12. 18., 2024. 1. 19. ~ 2. 2.,

2. 27. ~ 3.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출생아동에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1.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2.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2항에 따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3항에 따라”로, “반

영하여야”를 “반영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제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전단 중 “차관”을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조사 및 연구업무의 위탁) ① 국가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② 국가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

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6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한 첫만남이용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등) 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은 <u>출생아동에게</u> 일시에 지급한다.	제1조의2(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등) ① ----- -----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 -----.
<신 설>	1.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신 설>	2.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u>1년</u> 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⑥ ----- 2년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4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제4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

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

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 2월 말일까지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
--.

③----- 제2항에 따
라 -----

--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
-----.

④-----
----- 제3항에
따라 -----
----- 반영
해야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 ⑤ (생략)

<신설>

제8조(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 ①·② (생략)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간사위원 2명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2. 3. (생략)

④ ~ ⑥ (생략)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제처장-----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제8조(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 차관 또는 차장. -----
-----.

2. 3.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조사 및 연구업무의 위탁)

① 국가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u>제13조</u> (생략)	<u>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 1. <u>국공립 연구기관</u> 2. 「<u>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정부출연연구기관</u> 3. 「<u>고등교육법</u>」 제2조에 따른 <u>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u> 4. 「<u>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u> ② <u>국가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u> <u>제14조</u> (현행 제13조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397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4) 202 - 3691